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112
----------	------------

제출연월일	2015.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도로법」이 전부개정(2014.7.15.)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도로법」 등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단순 확인·재기재하여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군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부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함(안 제1조)

○ 「도로법」 제41조 ⇒ 「도로법」 제66조

나. 실효성 없는 조문 등 삭제함(안 제3조·제4조)

○ 징수의 위임, 점용의 허가신청

다. 상위법령을 단순 확인·재기재하는 내용 변경함(안 제3조 ~ 제6조)

○ 점용료 산정기준 및 조정산식 : 「도로법 시행령」 별표 3·4 적용

○ 점용료 부과징수 및 반환 :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등 적용

○ 점용료 감면사항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점용료 감면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제66조·제68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70조·제71조·제73조, 별표 3·별표 4,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제19조제19조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선

(3)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15. 10. 19. ~ 11. 18.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41조”를 “「도로법」 제66조”로 한다.

제2조 중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를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제3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6조를 제4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군수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는 법 제6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료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

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 중 “제5조”를 “제3조”로 “별표 2”를 “영 별 표 4”로 한다.

제8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 감면은 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른다.

제9조를 제7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로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p> <p>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⑤ 군수는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p> <p>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p>	<p>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군수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군수는 법 제6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료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p> <p>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p>

